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4항 관련)

연번	납입대상	납입금액
1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537만6천 미합중국달러
2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363만7천 미합중국달러
3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693만3천 미합중국달러
4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5	국제금융공사의 중소기업혁신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6	국제금융공사에 특별증자 출자	1천214만9천 미합중국달러
7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5만3천 미합중국달러
8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9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10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11	국제금융공사에 일반증자 출자	7천139만 미합중국달러
12	국제금융공사에 특별증자 출자	3천704만 미합중국달러
13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14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15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7만 미합중국달러
16	국제금융공사의 녹색회복혁신기금에 출연	307만 미합중국달러
17	국제금융공사의 녹색회복혁신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18	국제금융공사의 녹색회복혁신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1527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국제금융공사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